

■ 논문 ■

## 프랑스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본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의 적용

김진영

### 1. 머리말

이 글은 프랑스 공화주의와 프랑스 국적법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프랑스에서 공화주의는 프랑스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며, 국적법은 이러한 공화주의 이념을 토대로 프랑스인의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공화주의와 국적법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프랑스의 공화주의 이념의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프랑스의 고유한 가치이자 프랑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이념으로 간주된다.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에서 유래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공화국의 이념에 동조하고 자발적 의사로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라면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는 관련 없이 공화국의 시민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제3공화국이 등장하며 단순히 ‘하나의 제도적 체제’(régime institutionnel)의 의미를 넘어 ‘하나의 정치 모델’(un modèle politique)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sup>1)</sup>, 공화주의의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프랑스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1) 홍태영,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2005), 60.

그렇다면 프랑스 공화주의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958년 제5공화국 헌법 제1조에서도 “프랑스는 하나의(une), 불가분의(indivisible), 종교중립적인(laïque), 민주적인(démocratique), 사회적인(soci-ale) 공화국(république)이다”고 명시하면서 프랑스 공화주의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으며, 1980년대 프랑스에서 민족정체성 논란이 일어났을 때 국가통합고위위원회<sup>2)</sup>(HCI, Haut Conseil à l’integration)에서는 다시 한번 프랑스 공화국을 “프랑스는 하나의 불가분의 공화국(une République une et indivisible)이고, 종교중립적인 공화국(une République laïque)이며, 국민국가(État-Nation)이다”고 밝히며 프랑스 공화주의를 정의하였다.<sup>3)</sup>

하지만 이와 같이 프랑스 공화주의에 대한 정의를 국가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주의에 대한 논쟁은 프랑스 공화국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 왔다. 사실 공화주의는 하나의 명확하고 불변한 원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프랑스 대혁명 시기 다양하고 때로는 상이한 혁명의 실험 요소들을 분류하고 취합한 복합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결국 프랑스 대혁명의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프랑스가 공화주의를 정의하고자 했던 시기와 상황, 당대 프랑스의 정치 및 사회적 문제, 여론 등에 따라 수많은 공화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대혁명 시기에 등장하고 언급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매 시대마다 프랑스가 처해 있던 상황에 맞게 발전해 왔었다.<sup>4)</sup>

이러한 공화주의 이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

---

2) 국가통합고위위원회(HCI)는 1990년 정부의 이민문제에 관해 조언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이 위원회의 목적에 대해서, “통합은 모든 사회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활발히 참여하고 사회결속이 보장되도록...문화적 특수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정의했다. 박단, 『프랑스: 공화국과 무슬림 이민자』, 『현대서양사회와 이주민』 (한성대출판부, 2009), 37

3) Haut Conseil à l’integration, *Pour un modèle français d’intégration*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0).

4) 김용우, 「프랑스 공화주의 - 전체주의를 넘어서」, 「프랑스사연구」 21호 (2009), 176

국적법이다. 프랑스 공화국 구성원의 자격과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국적법은 프랑스 공화주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공화국을 구성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요소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의 자격 요소를 명시하고 공화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와 될 수 없는 자를 구분하는 국적법의 기준은 공화국 이념의 근간인 공화주의에 있으며, 공화주의 이념이 한 개인에게 적용되어 가장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적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자격과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법안이다. 그리고 국적법에는 한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국민들이 자신들의 공통 요소를 무엇으로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자신들과 타자를 구분하고 있는지가 나타난다. 국적법 개정이 나타나는 시기는 곧 국가가 자국민과 외국인을 새로운 기준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시기이다. 공화주의 이념을 정체성으로 두었던 프랑스는 항상 공화주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을 개정해 왔다. 그러나 공화주의를 어떠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프랑스 국적법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등장했으며, 때로는 완전히 상반된 국적 제도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본고는 공화주의 이념이 실제 정치의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제3공화국 시기부터 오늘날의 프랑스에 이르는 시기 중 국적법 개정의 폭이 넓고 프랑스 국적 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던 세 번의 국적법 제정을 분석하여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법 제정에 적용되는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이 세 시기는 프랑스 내에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며 프랑스인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정의와 구분을 필요로 하던 때였다. 1889년 국적법이 입안되던 19세기 말은 프랑스 내에 오래 전부터 정착해 왔던 외국 국적자의 문제가, 1927년 국적법이 제정된 전간기는 일자리를 찾아 온 유럽 출신의 이민자 문제가, 그리고 1993년 국적법이 제정되던 시기는 구 식민지에서 이주해온 무슬림 집단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던 상황이었다.<sup>5)</sup>

이 세 시기 모두에서 공화주의는 국적법 개정의 핵심 이념으로 작용했고 새로운 국적법을 입안했던 정책가들은 모두 새 법안이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이 왕당파와 교회 세력에 맞서 공화주의를 처음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시기에 제정된 1889년 국적법과, 1차 대전을 경험한 프랑스가 새롭게 사회 구성원을 정의했던 1927년 국적법, 구 식민지 출신자들과의 프랑스 본국인 사이의 갈등으로 등장한 1993년 국적법은 모두 공화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실제로 프랑스인을 정의하고자 했던 방향과 결과는 모두 달랐다. 그리고 세 국적법은 당시 프랑스가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프랑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국적법에 대한 분석은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하나의 고정불변의 이념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며, 실제로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당대 프랑스가 처해 있던 환경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 2. 1889년 국적법과 프랑스 거주 외국인 문제

보불전쟁의 패배로 인한 프랑스 제3공화국의 등장은 프랑스 대혁명이 낳은 공화주의 이념이 실제 프랑스의 정치 무대에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났

---

5) 제기한 세 가지 국적법의 원문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1889년 국적법에 대한 사료는 Louis Le Sueur, *La nationalité : commentaire de la loi du 26 juin 1889* (Paris: G. Pedone-Lauriel, 1890); Lucien Gérardin, *De l'acquisition de la Qualité de Français par voie de déclaration : étude sur le bienfait de la loi* (Paris: Librairie de la société du recueil général des lois et des arrêts, 1896); Victor Leray, *La loi du 26 juin 1889 et la condition des étrangers: droit international privé* (Paris: F. Mas, 1891) 를, 1927년 국적법의 원문은 *Loi sur la nationalité : Suivie des décrets et instructions relatifs à l'application de la loi du 10 août 1927* (Nancy: Berceur-levrault, 1927); *Comment devenir française? Loi du 10 août 1927 sur la nationalité* (Paris: Société générale d'immigration, 1927) 을, 1993년 국적법과 관련된 자료는 프랑스 법무부(<http://http://legifrance.gouv.fr/> 검색일자: 2015-05-25)의 *LOI n° 93-933 du 22 juillet 1993 réformant le droit de la nationalité*를 참고하였다.

다. 구체제 시기 군주의 지배를 통한 국가의 운영에 반대하고 국가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적 참여를 추구했던 대혁명의 정신은 왕정 복고와 두 차례의 제정이 이어진 19세기 동안 실제 정치에 구현되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 논의와 이념으로만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몰락한 제2제국을 대신하여 세워진 제3공화국에서 공화주의자들은 본격적으로 공화주의 이념에 따른 새로운 공화국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는 작업은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루이 아돌프 티에르(Louis Adolphe Thiers)가 이끄는 임시정부 내에서는 새롭게 수립된 국가가 어떠한 체제로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당시 공화주의자들은 프랑스 정계 내에서 다수를 구성하며 정국을 주도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아직 왕당파와 오를레앙주의자들의 정치적 권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공화주의자들은 다양한 세력들 가운데 큰 충돌 없이 무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체제이자 프랑스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로 공화국 체제를 추천하는 방향으로 정국을 유도하였다. 공화주의자들 가운데서는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극복하고 내외부의 적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혁명적 수단을 통한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급진주의자들도 존재하였지만, 공화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을 안심시키기 위해 레옹 강베타(Léon Gambetta)를 중심으로 한 공화주의자들은 제1, 2공화국이 보였던 급진성을 거부하고 공화국이 가지는 안정성과 공화주의가 가지는 포용성을 강조하며 ‘기회주의적(opportuniste)’ 공화파로 활동하였다.<sup>6)</sup> 이러한 기회주의적 공화파의 주장은 임시정부 내에서 새로운 국가의 정치체제로 인정받게 되었고 5년간의 논의 끝에 1875년에 이르러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 논의 끝에 구성된 제3공화국은 공화국 체제에 대한 포괄적

---

6) 하지만 이 시기 등장한 기회주의적 공화파 역시 급진 공화파들이 가졌던 공화주의 이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실제 정치를 추진하는 방법에서 기회주의적 공화파는 급진 공화파와는 달리 그 방법을 온건하고 보수적으로 추진하였다. J. Grévy, *La République des opportunistes 1870-1885* (Paris: GF-Glammarion, 1998), 30.

법률을 통해 성립되지 못하고 최소한의 합의만으로 구성되었다. 여전히 정국을 주도한 것은 오를레앙주의자와 온건공화주의 세력이었으며, 본격적으로 공화주의자들이 공화국의 요소를 수립해 나간 것은 제3공화국이 안정되고 공화파가 선거에서 승리한 1870년대 후반부터였다.<sup>7)</sup> 이 시기 이후부터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 이념에 따른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법안을 제정해 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쥘 페리(Jules Ferry)는 1882년 3월 28일 교육에 관한 법률을 통해 무상, 의무, 세속적 교육의 원칙을 확립하며 프랑스 국민을 공화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sup>8)</sup> 당시 교육은 교회가 주도하여 담당하고 있었는데, 공화주의자들은 국가 주도의 교육 체도를 확립함으로써 공화주의 시민을 양성하여 프랑스 공화국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국가 주도의 교육체도를 통해 가톨릭 교회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왕당파의 기반을 제거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공화주의자들의 교육 개혁과 교회 권력 제거는 1905년 정교분리법으로 이어지며 승리하게 되었다.<sup>9)</sup>

더 나아가 공화주의자들은 1884년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주의를 프랑스의 핵심 요소로 제정하기에 이른다.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 형태는 개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며 공화주의가 프랑스의 유일한 정치 체제임을 확고히 하였으며, 왕당파와 보수주의자들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상

7) 홍태영,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민주주의의 형성(1789-1884)」, 450-451

8)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쥘 페리(Jules Ferry)는 페리 법이라 불리는 1882년 3월 28일 법으로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종교 교육을 배제함으로써 공립학교의 교육과정을 비종교화시켰고, 이어 1886년 10월 30일에는 고블레(Goblet) 법 제17조를 통해 “모든 형태의 공립학교에서 교육은 전적으로 세속교사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명시하면서 종교인의 공립교육을 금지하며 교육의 라이시테를 완성시켰다. 지규철, 「프랑스헌법에서의 라이시테 원칙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10 (2009), 44

9) 이는 1905년 정교분리법의 제1조와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1조는 “공화국은 양심의 자유를 보호한다. 공화국은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이하에서 규정하는 제한에만 따르고 자유로운 예배를 보장한다”고 하며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수 없음을, 그리고 제2조 제1항은 “공화국은 어떤 예배에 대해서도 공인을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보조금을 교부하지도 않는다”고 하며 정치가 종교를 지원할 수 없음을 밝혔다. David Thomson, *France: Empire and Republic, 1850-1940 - Historical Documents* (New York: Harper & Row, 1968), 246-247. *Law of December 9, 1905, concerning the Separation of the Churches and the States.*

원의 종신 의원 제도를 폐지하면서 공화주의자들의 의회 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였다.<sup>10)</sup> 이렇듯 공화주의자들은 교육 제도의 개혁을 통해 프랑스 공화국의 시민을 양성하고 공화주의 정치 제도의 확립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을 구체화해 나갔다.

1889년 국적법의 제정은 이러한 공화주의자들의 공화주의 사회 구현이라는 목적에 방점을 찍는 것이었다. 프랑스를 공화주의 시민의 사회로 만들고자 했던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은 교육과 정치에서 공화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 시민을 규정하는 조건으로 공화주의 이념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기존의 프랑스 국적법은 1803년 나폴레옹 민법이 규정했던 프랑스인의 자격 요소를 그대로 유지한 채 19세기 말까지 적용되어 왔었으며,<sup>11)</sup> 나폴레옹 민법은 국적의 기준을 출생에 두는 속인주의(jus sanguinis)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속인주의 원칙은 공화국 내에서 공화주의의 교육을 받고 자란 시민들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국적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프랑스 내에서 태어나 공화주의 교육을 받고 프랑스 공화국에 동조하는 시민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국적이 프랑스가 아니라면 그는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공화주의를 거부하고 교회와 왕당파에 동조하면서 공화국을 떠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그 부모가 프랑스인이라면 프랑스인의 권리를 인정받고 프랑스 국적을 보유할 수 있었다. 프랑스가 속인주의적 국적 제도를 유지하는 한 공화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공화주의 시민으로 구성된 프랑스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19세기 프랑스의 국적제도가 철저하게 속인주의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외국인의 귀화를 거의 허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제3공화국 수립 이전까지 프랑스 내의 외국인들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거주허가권을 획득하여 프랑스 국민

10) 홍태영, 위의 논문, 452

11) *Code Civil*, article 8 (1804).

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sup>12)</sup> 그렇기에 프랑스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프랑스에 정착하여 사실상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외국인의 자녀들은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프랑스 사회 내에서 생활하였으며, 이들은 프랑스 국적이 없을 뿐 그 외에는 프랑스인과 다를 것이 전혀 없었다. 실제로 1886년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112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자란 외국인이 절반에 달했다.<sup>13)</sup>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사회화된 공화국 시민이 프랑스 국적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은 공화주의자들이 반드시 개정해야 할 부분이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화주의자들은 프랑스 국적의 기준을 영토에 두는 속지주의(jus soli)를 강화하는 개정 국적법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나폴레옹 민법에 명기된 국적 조항의 수정을 통해 이루어진 1889년 국적법 개정은 프랑스인의 혈통을 가지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프랑스 영토 내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프랑스 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에서 공화주의 교육을 받고 사회화된 자들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하기 위해 공화주의자들은 1851년 이미 도입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이중속지주의<sup>14)</sup>(double jus soli)를 강화하였다. 1889년에 개정된 민법 제8조 제3장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을 부모로 두고 프랑스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는 태생적으로 프랑스인”<sup>15)</sup>임을 밝히며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민 3세대에게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을 부여했다. 또한 민법 제8조 제4장에서는 외국 출생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프랑스 출생의 외국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프랑스 국적 획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면서 이민 2세대까지도 프랑스인으로

12) 이는 나폴레옹 민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13조는 “프랑스 내 거주에 대한 황제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들이 연속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동안 시민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Code Civil*, article 13 (1804).

13)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45.

14) 이중속지주의는 속지주의의 원칙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경우로, 이에 따르면 부모 또는 모가 ‘프랑스에서’ 출생했고 그 자녀도 ‘프랑스에서’ 출생하면 출생과 더불어 자녀가 국적을 얻는다.

15) 법을 제정했던 1889년에는 아버지에 한해서 적용했지만, 1891년에는 어머니에게도 적용하면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프랑스 출신의 외국인일 경우 그 자녀는 프랑스 국적을 부여받게 되었다.

받아들이며 속지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였다.<sup>16)</sup>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이 1889년 국적법을 통해 이민 2세대와 3세대를 프랑스 국민으로 포함시킨 것은 그들이 구상한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였다. 공화주의자들은 개인의 혈통과 관련 없이 프랑스 내에서 교육받고 사회화된 시민이라면 프랑스 문화와 문명에 동화된 시민이 된다고 간주하였고, 비록 프랑스인의 혈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프랑스 문화를 접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외국의 문화와 습관,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고 여겼다. 외국인 자녀가 프랑스식 교육을 모두 받고 성인이 된다면 그의 가족이 주는 영향력이 거의 사라지고 프랑스로의 사회화가 완수되어 완벽한 프랑스인이 된다고 믿었다.<sup>17)</sup> 이 시기 공화주의자들은 공화국의 교육이 공화주의 시민을 기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자신감이 바로 1889년 국적법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화주의자들이 이민 2, 3세대에게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프랑스 국민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과는 달리 이민 1세대는 프랑스 국적자의 범위에서 배제되었다. 이민 1세대들은 오히려 기존의 프랑스 민법이 인정해 주었던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며 전보다 더 열악한 처우를 받았다. 1세대 이민자들은 1889년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5년 마다 주기적으로 거주허가증을 갱신 받아야 했으며, 거주지 신고가 의무화 되었고 특정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기도 했다.<sup>18)</sup> 이들이 프랑스에 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차단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프랑스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자본을 가진 일부 외국인에게만 귀화가 허락

---

16) Louis Le Sueur, *La nationalité : commentaire de la loi du 26 juin 1889*, 5.

17) Lucien Gérardin, *De l'acquisition de la qualité de français par voie de déclaration : étude sur le bienfait de la loi* (Paris: L. Larose, 1896), 3,

18) Lucien Gérardin, *De l'acquisition de la qualité de français par voie de déclaration : étude sur le bienfait de la loi*, 21-23.

되었을 뿐이었다.<sup>19)</sup>

이러한 1889년 국적법은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이 당시 프랑스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 중 1세대 이민자와 2, 3세대 이민자를 구분하여 취급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화주의자들에게 1세대 이민자는 프랑스 공화주의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프랑스에 사회화될 수 없는 부류로 간주되었고, 이와는 반대로 2, 3세대 이민자들은 프랑스 공교육을 받고 사회화되어 공화주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보유한 사람들로 인정되었다. 이는 당시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인 공화주의를 적용하였다기보다는 프랑스 공화국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를 구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아 프랑스로의 사회화가 가능하다고 간주된 자들만을 공화국의 일원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의 공화주의자들이 1889년 국적법을 통해 속지주의를 강화한 이유에는 공화주의의 구현이라는 이념적인 요소 외에도 기존의 국적 제도로 인해 프랑스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과 관련된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 역시 반영되어 있었다. 거의 1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속주주의와 외국인의 자유로운 거주허가 제도는 보불전쟁 이후 프랑스가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프랑스인의 큰 불만을 사게 되었다.<sup>20)</sup> 군역의 의무를 가지는 자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남성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라 프랑스인과 다를 것이 없는 외국 국적자들

19) 국적법에서 프랑스가 귀화를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고 지정한 외국인은 프랑스 군대에서 복무한 자, 국가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가진 자, 유용한 발명품을 고안하거나 도입한 자, 프랑스 내에서 산업 시설을 확충한 자 등 프랑스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이었다. 1927년 국적법은 이러한 조건에 프랑스 학위를 취득한 자와 프랑스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를 추가하여, 귀화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Loi du 10 août 1927 sur la nationalité*, 27.

20) 보불전쟁 이전까지의 프랑스의 병역은 구비옹생시르(Gouvion-Saint-Cyr)가 발의한 1818년 3월 10일 법에 따라 추첨에 의한 개병제를 따르고 있었다. 이후 의무 복무 기간의 변화가 몇 차례 있었지만, 추첨에 의해 선출된 시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돈을 지불하고 대체 병력을 보내는 것이 허용되는 큰 틀은 1872년까지 변하지 않았다. Annie Crépin, *La conscription en débat ou le triple apprentissage de la Nation, de la Citoyenneté, de la République (1798-1889)* (Arras: Artois Presses Université, 1998), 9.

은 징집의 대상에서 빠져 나가게 되었고 이는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 역시 최대한 많은 군인을 확충하기 위해 이러한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sup>21)</sup> 공화주의자들이 도입한 속지주의 원칙은 이들에게 프랑스 국적을 부여함과 동시에 군역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1889년 국적법을 제정한 공화주의자들은 공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공화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여기며 프랑스에서 교육받고 사회화될 수 있다고 여긴 이민 2, 3세대 집단만을 을 수용하는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와 동시에 당대 프랑스 사회의 문제였던 군 복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 3. 1927년 국적법과 유럽 이민자 문제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은 프랑스 내 외국인들 중 공화주의 교육을 받은 이민 2, 3세대를 사회 구성원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프랑스는 1차 대전을 경험하며 새로운 외국인 집단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국적법의 필요성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제정된 1927년 국적법 역시 프랑스의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1차 대전은 프랑스의 인구 구성에 전례 없는 변화를 초래하였다. 전쟁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프랑스 청년 남성 370만 명이 전선으로 투입되었으며, 1차 대전 시간 중 프랑스 전체 인구의 20.5%에 달하는 8백만 명의 프랑스 남성이 모병되었다.<sup>22)</sup> 최초의 전면전 양상을 띠었던 1차 대전의 결과로 프랑스는 130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을 뿐 아니라, 프랑스 남성 노동

---

21) Donald L. Horowitz, Gérard Noiriel ed., *Immigrants in Two Democracies: French and American Experience*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92), André-Clément Decouffé, "Historic elements of the politics of nationality in France, 1889-1989," 5.

22) Georges Dupeux, *La Société Française, 1789-1970* (Paris: Armand Colin, 1792), 박단·신행선 역, 「프랑스 사회사 1789-1970」 (동문선, 2000), 218.

력의 10.5%를 상실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sup>23)</sup>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는 3백만 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5만 명은 완전한 불구자가 되며 프랑스는 ‘한 세대를 상실했다’고 언급될 정도로 1차 대전의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sup>24)</sup>

자국 청년 노동력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의 전후 경제복구 작업은 자연스레 인근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되었고, 이들은 1920년대 프랑스의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등장하였다. 1차 대전이 진행되는 중에서만 약 44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전시 경제의 노동력 충원으로 프랑스 내로 이주하였는데, 이 중 대다수는 프랑스의 인접국인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탈리아 출신이었다.<sup>25)</sup> 프랑스의 전후 복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경제 호황기를 맞이하자 프랑스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더욱 증가했고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프랑스 여성의 수도 늘어나면서 1920년대 프랑스 사회의 인구 구성은 1차 대전 전과는 또 다른 모습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20년대의 공화주의자들은 프랑스 사회 구성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또 한 번 국적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국적법은 크게 세 부류의 집단에게 프랑스 국적의 접근권을 확대하였다. 먼저 1889년 국적법에서 인정된 속지주의 원칙이 더욱 확대되어 출생 시 프랑스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집단이 더욱 증가했으며, 외국인과 결혼한 프랑스 여성의 프랑스 국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국제결혼으로 프랑스 국적을

---

23) Ralph Schor, *Histoire de l'immigration en France de la fin du XIX siècle à nos jours* (Paris: Armand Colin/Masson, 1996), 45; Gérard Noiriel, *Les ouvriers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XIXe-XXe siècle*, 125. 제라르 누아리엘은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로 인해 프랑스의 산업노동 인구 중 약 10%가 손실되었다고 밝혔다.

24) Georges Dupeux, *La Société Française, 1789-1970*, 박단, 신행선 역, 「프랑스 사회사 1789-1970」, 218-219.

25) 이들 외국인의 국적과 인원을 살펴보면, 에스파냐 및 포르투갈에서 186,000명, 이탈리아에서 7,500명, 그리스에서 25,000명, 알제리와 튀니지, 모로코에서 58,000명, 마다카스카르에서 49,000명, 중국과 베트남에서 36,000명이 프랑스로 들어왔다. Vincent Vict, *La France Immigrée: Construction d'une politique 1914-1997* (Paris: Librairie Arthème Fayard, 1998), 3.

상실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sup>26)</sup> 또한, 귀화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들의 프랑스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였다.

속지주의 원칙의 확대는 1927년 국적법 제1조에서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기존 국적법인 1889년 국적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프랑스 태생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프랑스 국적을 획득할 수 있게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국적 전수의 권리가 남성에게만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모계를 통한 속지주의의 적용은 허용되지 않았다.<sup>27)</sup> 그러나 1927년 국적법은 법조문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어머니를 통한 국적 전수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표기하면서 모계를 통한 프랑스 국적 전수를 허용하였다.<sup>28)</sup> 이를 통해 외가 쪽으로 프랑스와 혈연 관계가 있거나 속지주의를 적용받는 자녀들이 프랑스 국적자로 인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1927년 국적법은 외국인과 결혼한 프랑스 여성의 프랑스 국적에 대한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1803년 나폴레옹 민법이 제정되어 국적에 대한 근대적 개념이 탄생한 이래 1927년까지 프랑스에서 기혼 여성의 국적에 대한 권리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19세기 유럽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남편의 국적을 전수받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프랑스 역시 기혼 여성의 국적이 남편에게 종속된다는 점을 민법으로 명기하며 국제

---

26) 1927년 국적법의 시행령에서는 해당 법의 특징을 7개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밝힌 3개의 내용 이외의 것은 국적박탈과 폐기되는 과거법, 경과조항 등 부차적인 조항이며, 1927년 국적법의 핵심은 프랑스 국적자의 정의, 귀화 규정, 프랑스 여성의 국적 권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Loi sur la nationalité : Suivie des décrets et instructions relatifs à l'application de la loi du 10 août 1927.*

27) 본래 1889년 국적법 제정 당시에는 나폴레옹 민법 제8조 제3항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가 프랑스에서 태어났을 때, 그 자녀는 프랑스인이다”고 지정하였으나, 여기서 의미하는 외국인은 오직 남성만을 의미했다. Victor Leray, *La loi du 26 juin 1889 et la condition des étrangers* (Paris: F. Mas, 1891), 2.

28) 1927년 국적법 제1조 제3항은 ‘프랑스에서 프랑스 국적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적출자’, 제2조 제1항은 ‘프랑스에서 프랑스 출생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적출자’라고 명기하고 있다. *Ibid.*, 1.

결혼을 한 프랑스 여성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왔다.<sup>29)</sup> 그렇기에 1927년 이전까지 외국인과 결혼한 프랑스 여성은 외국인이 되어 그들의 자녀에게 프랑스 국적의 권리를 전수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 1927년 국적법 제8조는 국제결혼을 한 여성의 국적 문제를 다루었고, 부부가 결혼하여 프랑스에 거주할 경우 프랑스 여성이 자신의 프랑스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sup>30)</sup>

귀화 규정의 개선은 프랑스 국적법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개방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주었다. 프랑스는 19세기 이래 유럽 최대의 이민국이었으나 외국인이 귀화하여 프랑스 국적을 획득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으며 1889년 국적법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었다. 프랑스는 1799년 공화국 8년 헌법에서 프랑스로 귀화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한 이래 1927년까지 이 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sup>31)</sup> 그러나 1927년 국적법에서는 제6조 제1항을 통해 ‘18세 이상의 외국인의 경우, 프랑스에서 연속적으로 3년 간 거주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힘으로써 프랑스에서 거주한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누구든 프랑스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sup>32)</sup> 또한, 개정 국적법은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21세에서 18세로 낮추어 더 많은 외국인이 프랑스 국적을

29) 나폴레옹 민법 제12조와 제19조는 기혼 여성의 국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2조에서는 프랑스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이 자신의 국적을 잃고 프랑스 국적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제19조에서는 반대로 프랑스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할 경우 프랑스 국적을 잃고 남편의 국적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Elisa Camiscioli, *Reproducing the French Race: Immigration, Intimacy, and Embodiment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9), 156.

30) *Loi du 10 août 1927 sur la nationalité*, article 8, 5.

31)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889년 이전까지 국가로부터 거주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1~3년 이후로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는 “프랑스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 “특정적인 재능을 가진 자”에게만 해당하였으며, 1889년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1894년 이후로 이러한 권리가 없는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10년 동안 프랑스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없었다. Garner, “The New French Code of Nationality,” 380-381.

32) *Loi du 10 août 1927 sur la nationalité*, 3-4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sup>33)</sup> 귀화특례 집단을 지정하여 이들에게는 1년의 프랑스 거주 기간만 충족하면 바로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이러한 특례조항은 1889년 국적법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1889년 국적법은 특례자에게도 3년의 거주 기간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많은 외국인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27년 국적법은 프랑스나 연합국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한 자, 프랑스의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프랑스에서 태어나 성년이 되어 프랑스에 자신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1년으로 경감시켜 줌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이 신속하게 프랑스로 귀화할 수 있게 하였다.<sup>34)</sup> 이러한 귀화 제도의 개정은 1889년 국적법이 1세대 이민자를 공화국 시민의 범주에서 배제시킨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1889년 국적법이 공화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교육과 사회화를 필수 요소로 보았던 반면 1927년 국적법은 1세대 이민자의 귀화를 장려하며 교육과 사회화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27년 국적법을 제정한 입법부는 귀화 제도의 대대적인 개정에 대해 해당 법이 공화주의 정신을 구현한 1889년 국적법의 입법 의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제3공화국의 국적법 정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sup>35)</sup> 실제로 1927년 국적법에서 개정된 부분들은 1889년 국적법을 근간으로 해당 사항들을 확장하여 해석한 결과물이었으며, 새로운 이론이나 개념들이 첨가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귀화를 위한 거주기간의 축소를 설명하면서 1927년 국적법 입법가들은 프랑스 국적법의 기본 원칙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거의 국적법이 외국인의 ‘실질적 동화’(l'assimilation de fait)가 모두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외국인의 ‘법적 동화’(l'assimilation de droit)를 인정했던 부분을 변경한다고 밝히고 있다. 귀화 희망자에게 10년의 프랑스 내 거주 기간을 요구한 것은 귀화 희망자가 10년 간 프랑스 사회 내에 살며 프랑스인으로 모든 동화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보장된 후에 국

33) Arzu Aktas, *L'acquisition et la perte de la nationalite française : 1804-1927* (Paris: Université Paris-Est, 2011), 143.

34) *Loi du 10 août 1927 sur la nationalité*, 27.

35) *Ibid.*, 16.

적 발급을 통해 마지막으로 법적 동화를 인정한 것이 기존의 프랑스 국적법의 의도였다. 그러나 1927년 국적법은 법적 동화를 먼저 실시하여 귀화희망자가 완전히 프랑스에 사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적을 부여하였으며, 국적법의 입안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프랑스 국적을 얻게 된 귀화자는 프랑스 사회에 전보다 더 큰 소속감을 느끼게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프랑스 사회에 동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sup>36)</sup> 1927년 국적법을 입안한 자들은 귀화가 프랑스로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듯 귀화가 프랑스로의 사회화를 ‘확증’하는 것에서 ‘예측’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이 시기 프랑스가 외국인의 사회화가 완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귀화 자체가 사회화를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프랑스 여성의 국적에 대한 권리를 확장한 것에 대해서도 1927년 국적법은 해당되는 개정이 프랑스 공화주의를 거스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이 프랑스에서 계속 거주하며 살아갈 경우 프랑스 사회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프랑스에 사회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여성의 자녀들은 다른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프랑스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자라나기 때문에 프랑스 여성 역시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37)</sup>

이렇듯 1927년 국적법은 전쟁 전과는 다른 사회 양상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화주의 이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을 프랑스 국적자의 범주 내로 포함시켰다. 이는 19세기 말의 공화주의자들이 프랑스 공화국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의 자녀만을 공화국 시민으로 인정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1927년 국적법을 평가한다면 프랑스의 가치에 자발적으로 동조하는 시민들을 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공화주의 이념이 더욱 확장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27년 국적법은 공화주의 이념의 구현이라는 측면보다는 당시 프랑스 사회가 가지고 있던 실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측면

---

36) *Ibid.*, 25.

37) *Loi du 10 août 1927 sur la nationalité*, 17-18.

이 더욱 강했다. 1920년대 프랑스 사회는 인구 구성원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국민의 수를 증가시켜 국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특히 1차 대전을 겪고 난 후 이러한 인구 문제는 국정의 현안으로 등장했는데, 인구의 부족은 곧 프랑스를 지킬 군인의 수와 직결되는 문제 이기에 국내의 외국인들에게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여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유사시 군역을 부과할 수 있는 국민을 늘이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1927년 국적법의 입법 취지와 시행 세칙을 밝히고 있는 시행령은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법적 동화는 반드시 실질적 동화가 수반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과거 프랑스의 국적법에 대한 개념이었다. 이러한 과거의 개념은 공공안전과 국가 보호라는 측면에서 1914년-1918년의 전쟁 이전 시기에는 적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구통계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오늘날, 프랑스는 본국인의 인구가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민으로 인해 공화국의 영토 내에 외국인이 급증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프랑스 내에 다수의 외국인을 두는 것은 공공안전과 국가 보호를 위협하는 처사이며, 이들 중 프랑스 인접국의 외국인에게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면서 프랑스인들과 교류하고, 프랑스 교육을 받으며, 프랑스 군대에 복무하게 하는 것은 완벽한 동화를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이다.<sup>38)</sup>

1927년 국적법의 시행령이 보여주고 있듯이, 1927년 국적법이 외국인의 귀화 요건을 전례없이 완화시키고, 그 동안 무시되어 왔던 프랑스 여성의 국적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은 프랑스 국적자를 늘이면서 프랑스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189년의 프랑스는 공화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배제하고 공화주의 교육을 받는 후속 세대들만을 공화국 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 교육과 사회화를 경험한 부류만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하는 국적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외국인 문제와 인구 위기를 겪은 1927년의 프랑스는 프랑스로의 사회화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

38) 국적법 시행령 원문에서 동화의 원칙을 변경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한 부분이다. *Ibid.*, 24-25.

회 구성원에게도 프랑스 국적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공화주의의 구현은 국적법 개정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었으며 인구 증가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1927년 국적법으로 인해 프랑스는 가시적인 인구 증가를 이루어 내었다. 국적법 제정 전인 1925년과 1926년에는 귀화자가 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1927년 국적법 제정 이후인 1928년과 1929년에 22,5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33년에는 최고치인 24,763명을 기록하였다. 1932년 법무부에서 1927년 국적법의 결과를 파악하였을 때, 약 350,000명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중 약 170,000명이 귀화나 국적회복을 통해 프랑스 국적을 얻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sup>39)</sup>

그러나 갑자기 프랑스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했던 1927년 국적법은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30년대의 경제 침체와 실업률의 증가는 더 이상 프랑스가 외국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기존의 프랑스인과 새롭게 프랑스 국적을 얻은 이민자들은 서로 갈등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 4. 1993년 국적법과 무슬림 2세대 문제

2차 대전 이후 프랑스는 또 한 번 대규모 이민을 맞이하게 된다. 이민의 양상은 1920년대와 동일하게 전후 복구를 위한 재건 작업으로 인한 이주 노동자의 유입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프랑스의 상황과는 달리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영광의 30년’ 동안 유입된 이민자들 중

39) 1927년 국적법은 귀화 제도를 개방함과 동시에 외국인과의 결혼한 프랑스 여성에게도 다시 프랑스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남성과 프랑스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1927년 국적법에 따라 프랑스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 자들의 수가 35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17만 명이 실제로 1927년 국적법 제정에 따라 프랑스 국적을 획득하는 수혜를 얻게 되었다.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71.

에는 프랑스 인근의 유럽 국적 이민자가 아닌 프랑스 식민지 출신자들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인근 국가의 이민 노동자를 더 선호하고 있었고, 실제로 출신 국가에 따른 외국인 입국 쿼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선별적 입국이 불러올 정치적 과장과 외교 문제 등을 예상하여 자유로운 노동 입국을 허용하였다.<sup>40)</sup> 그러나 이민 노동자를 특별히 선별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던 더 큰 이유는 프랑스가 미국 주도의 서유럽부흥계획으로 프랑스의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더욱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많은 알제리인들이 이 시기 프랑스로 이주하였는데, 이 당시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외국 노동자들이 프랑스로 들어오는 것보다 알제리인들이 프랑스로 건너오는 것이 더욱 용이하였다. 알제리 노동자들은 1945년부터 1955년까지 약 18만 명이 프랑스로 유입되었는데, 같은 시기 프랑스로 입국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약 16만 명이었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알제리인들이 프랑스 내의 노동력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1)</sup>

이러한 알제리인의 프랑스 유입은 1962년 알제리가 프랑스에서 독립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알제리와 프랑스 간에 맺어진 전후 조약인 에비앙 협정(Conférences d'Évian)에서 프랑스와 알제리 양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알제리인들은 독립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약 없이 프랑스로 이동하여 직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조항을 삽입했던 프랑스는 아직 알제리에서 프랑스로 돌아오지 못한 프랑스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자유로운 이동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것은 알제리 측이었다. 독립 이후 불안한 정국 속에서 프랑스로 이주하는 알제리인들이 더욱 많이 늘어났고, 특히 1962년 에비앙 협정 이전에 알제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프랑스의 식민지인으로서 프랑스 국적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었기에 알제리 독립이 알제리인들의 프랑스 유입에 제약을 주지 못했다. 프랑스는 증가하는 알제리 이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연간 입국자의 수를 지정하는 등의

40)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152.

41) *Ibid.*, 153.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sup>42)</sup> 특별하게 강압적으로 이민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이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프랑스가 이민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알제리 이주민들이 영구히 프랑스에 정착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영광의 30년의 마지막 해인 1973년 1월에는 프랑스의 안정된 노동력 수급을 의도한 1973년 국적법이 제정되었다. 1973년 국적법은 1889년 국적법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던 이중속지주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여 프랑스 본국 뿐 아니라 구식민지 영토, 그리고 프랑스의 해외영토까지도 이중속지주의를 통한 국적 획득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하였다.<sup>43)</sup> 프랑스 국적법에서 속지주의 원칙은 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프랑스 공화국의 주요한 원칙이었다. 그리고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탈식민주의로 인해 대부분의 과거 식민지의 독립을 허용한 상황이었지만, 과거 식민지 지역이 프랑스의 합법적인 영토였음을 부정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구식민지와 해외영토에도 이중속지주의를 적용하였다. 또한 1973년 국적법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 5년 간 프랑스에서 거주했다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속지주의 원칙을 더욱 넓게 해석하였다.<sup>44)</sup>

그러나 1973년 국적법이 제정된 그 해 10월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침체가 찾아오면서 30여년 간 호황을 맞던 프랑스 경제는 장기 불황에 접어들게 되었다. 더 이상 프랑스는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기존에 프랑스로 이주해 온 구식민지 출신자들이 이미 프랑스에 정착하였고 많은 수가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였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은 1974년 이민을 중단하였고, 1977년부터는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할 경우

42) 에비앙 조약 이후 프랑스의 예상과는 달리 알제리 이민자가 증가하자 1968년 프랑스는 알제리와 연간 2만 5천 명의 이민자만을 수용한다는 조약을 맺기도 하였으며, 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용이한 알제리인들의 이주를 견제하기 위해 알제리를 제외한 마그레브 국가나 다른 유럽 국가에게 프랑스 노동 이민을 장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43)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du 10 Janvier 1973* (loi n°73-42 du 9 janvier 1973) article 24, 468.

44) *Ibid.*, article 48, 468.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프랑스 내의 이민자를 돌려보내고자 노력하였다.<sup>45)</sup> 하지만 오히려 포르투갈인을 비롯한 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이 이 혜택을 받고 본국으로 귀국하였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목표였던 마그레브 이민자들의 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구식민지 이주민의 문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프랑스 내에서 더욱 커져가게 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자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민 2세들이 프랑스 사회 내의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 이민자 2세의 부모들은 프랑스 식민지 영토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이 프랑스로 이주해 프랑스 영토 내에서 그들의 자녀를 출생했기 때문에 이민자 2세들은 이중 속주주의의 적용을 받아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프랑스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프랑스 주류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종교와 인종이 다른 북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2세들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프랑스 내의 한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자 프랑스인들의 불만이 증가하였고, 현행 국적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극우정당 민족전선(Front National)이 이민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기치로 정계에 등장하게 되자 프랑스 우파 정당인 공화국연합(RPR)에서도 이민자 문제를 선거강령에 포함시키면서 무슬림 2세대 문제를 프랑스 정치의 이슈로 부각시켰다. 이들은 마그레브 이민 2세대들이 야기하는 사회 불안을 강조하고 이들이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민 문제를 공론화했다. 우파 세력은 프랑스 내의 무슬림 집단이 프랑스 공화국에 동화되지 않고 공화국의 가치와 문화를 따르지 않으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들이 프랑스의 정체성을 가지기보다는 자신들의 가족인 북아프리카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우파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공화국에 동조하지 않는 집단에게 프랑스 국적을 부여한 기존 국적법은 현 이민 문제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

45) 한명숙, 「프랑스 국적법 개정과 북아프리카 이민자 문제, 1986-1993」, 『프랑스사연구』, 20호, 159

목되었고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요소가 되었다. 1973년 국적법을 대신하기 위한 새 국적법 입안의 움직임이 우파 정치인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거나 관심을 보였다. 공화국연합의 원들이 제출한 개정 국적법안에는 이민 2세대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되는 이중속지주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이중속지주의가 더 이상 군사적 및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프랑스에 필요 없는 제도이며, 프랑스 국적은 프랑스인의 혈통으로만 전수되는 엄격한 속인주의 원칙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sup>46)</sup> 그러나 이러한 우파의 주장은 과도하게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프랑스 행정부에서도 속지주의 원칙은 1889년 국적법 제정 이래 프랑스 국적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는 점을 들어 속지주의 원칙을 철폐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여 진행되었고 국적법 개정 논쟁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프랑스 의회에서는 여러 논의를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1993년에 이르러서는 메에뉴리법(*loi Méhaignerie*)이라 불리는 새로운 국적법이 제정되었다. 1993년 국적법에는 여전히 속지주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1973년 국적법에 비해 매우 축소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부과되어 있었다. 기존의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인 부모를 두고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성년이 되었을 때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3년 국적법은 반드시 13세에서 18세까지 5년 간 프랑스에 거주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프랑스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47)</sup> 이 부분은 의외로 많은 무슬림 2세대들이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었는데, 16세에 학교를 졸업하고 실업 상태에 있던 이민 2세대들이 프랑스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48)</sup> 게다가 1993년 국적법은 단순히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거주했다는 것만으로 프랑스 국적을 획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속지주의 원칙으로 프랑스 국적을 가지게 되는 이민 2세대들은 스스로가 프랑스의 공화주의 이념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선언(*la manifestation*

46)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157.

47) *Ibid.*, 165.

48) *Ibid.*, 166.

de volonté)을 수행해야 프랑스 국적을 얻게 되었다.<sup>49)</sup> 프랑스 대혁명 초기 시민 선서를 한 외국인들에게 프랑스인의 자격을 부여한 것을 들어<sup>50)</sup> 프랑스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프랑스 공화주의에 동조하고 프랑스 사회와 문화에 대한 동화의 의지를 확인받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1993년 국적법은 더 이상 부모가 자녀의 프랑스 국적 신청을 대신할 수 없도록 지정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국적을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표명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는 의지선언과 함께 프랑스 국적을 희망하는 자의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sup>51)</sup> 또한 1993년 국적법은 해당 개정법의 가장 큰 목적이 알제리 출신 이주민 2세대의 국적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알제리 출신 이민자의 2세들은 이중속주주의를 적용받아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프랑스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sup>52)</sup>

1993년 국적법은 명백히 구식민지 출신 이주민의 자녀들에게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게 하는 것을 의도하였으며, 이들의 프랑스 국적에 대한 권리에 제약을 두는 근거는 공화주의에 있었다. 공화국은 개인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표명한 시민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들 무슬림 2세들은 자신들끼리 모여 공화국의 가치와는 다른 북아프리카의 문화를 유지하고 프랑스 가치에 동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개정의 주된 근거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동화되지 않는다고 간주되었던 이들 무슬림 이민 2세대가 프랑스 국적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 역시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국적 제도 때문이었다. 이들은 공화주의 이념에서 출발한 프랑스 국적제도의 전통인 속주주의 원칙에 따라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결과로 프랑스 국적을 얻었던 것이다. 이들 무슬림 2세들은 프랑스 공화주의에 따른 공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았고 프랑스에서 태어

49) *Loi n° 93-933 du 22 juillet 1993 réformant le droit de la nationalité*, article 11.

50)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13.

51) 한명숙, 「프랑스 국적법 개정과 북아프리카 이민자 문제, 1986-1993」, 173.

52) *Loi n° 93-933 du 22 juillet 1993 réformant le droit de la nationalité*, article 19.

나 프랑스 문화를 향유하며 자라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국적법의 입안자들은 과거 공화주의 이념이 국적법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의지선언을 만들어내면서 무슬림 2세들을 공화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이다.

## 5. 맺음말

개인의 출신과 배경에 관련 없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공화국의 가치에 동조하며 자발적으로 참여 의지를 보이는 자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사실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동질성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사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모두 추상화된 한 개인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개인들이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추상적인 개인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배경과 특색, 성향 등이 모두 배제된 추상적 개인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이 바로 프랑스 공화주의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추상적 개인을 전제하고 있기에 구성원들은 개인의 특징이나 배경과 같은 차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동화와 통일성을 강조하게 된다.<sup>53)</sup>

실제로 1889년 국적법 제정 과정에서는 공교육과 사회화가 공화주의의 핵심요소로 간주되면서 이민 1세대가 배제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27년 국적법에서는 프랑스의 가치와 문화를 습득하지 못하는 부류로 지정되었던 이민 1세대를 오히려 프랑스 국적자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1993년 국적법 제정 과정에서는 1889년 국적법이 공화주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으로 도입한 이중속주주의가 공화국의 분열을 조장하고 문제를

---

53) 프랑스 공화주의의 추상성과 관련된 주장은 Joan Scott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Joan Wallach Scott, *The Politics of the Veil*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07), 117.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1889년 국적법에서는 교육과 사회화가 공화국 시민 양성의 핵심 요소로 여겨졌으나 1993년 국적법은 무슬림 2세대가 프랑스 내에서 교육을 받고 긴 시간 동안 프랑스 문화와 가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동화되지 않았다고 여기면서 공화주의 이념을 정착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의지선언 과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적법 개정은 단순히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을 시행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당시 프랑스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제정되는 경향이 강했다. 주로 노동력이 필요한 경제성장기나 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화주의 이념이 사용되며, 반대로 경제 침체기에는 소수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의 프랑스 국적법은 1993년 국적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프랑스는 1993년 국적법 제정 이후에도 몇 차례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지만, 외국인의 국적 발급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및 의지선언의 필수 등 1993년에 제정된 국적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 국적법은 현재 프랑스가 공화주의를 적용하는 방향과 프랑스가 처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당분간은 계속 유지되리라 여겨진다. 유럽 연합이 당면한 경제 위기, 샤를리 엡도 사건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와의 갈등 등과 같이 현재 프랑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더욱 외부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서강대학교, adelaide16@sogang.ac.kr

주제어: 프랑스 국적법(French Nationality Law), 프랑스 공화주의(French Republicanism), 1889년 국적법(The Nationality Law of 1889), 1927년 국적법(The Nationality Law of 1927), 1993년 국적법(The Nationality Law of 1993)

(투고일: 2015. 5. 26, 심사일: 2015. 6. 1, 게재확정일: 2015. 6. 11)

<국문초록>

프랑스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본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의 적용

김진영

이 글은 프랑스 공화주의와 프랑스 국적법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프랑스 공화주의는 공화국의 이념에 동조하고 자발적 의사로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라면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는 관련없이 공화국 시민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국적법은 이러한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념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에 공화제가 정착된 이후 이루어졌던 프랑스 국적법 개정 중 주요한 세 차례의 국적법을 분석하였다.

1889년 국적법과 1927년 국적법, 그리고 1993년 국적법은 모두 프랑스 공화주의를 이념적 바탕으로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 법이 적용된 결과는 모두 상이하게 나타났다.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이 왕당파와 교회 세력에 맞서 공화주의를 처음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시기에 제정된 1889년 국적법과, 1차 대전을 경험한 프랑스가 새롭게 사회 구성원을 정의했던 1927년 국적법, 구 식민지 출신자들과의 프랑스 본국인 사이의 갈등으로 등장한 1993년 국적법은 모두 공화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실제로 프랑스인을 정의하고자 했던 방향과 결과는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세 국적법은 당시 프랑스가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프랑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국적법에 대한 분석은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하나의 고정불변의 이념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며, 실제로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당대 프랑스가 처해 있던 환경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Abstract>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French republicanism  
through the French nationality law

Jinyoung, Kim

This text is another attemp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rench republicanism and the French Nationality law. French republicanism focuses on the key point that the citizens who agree to the republic's ideology and try to participate in a community voluntarily can be accepted as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regardless of social, economic, cultural background of the individuals. The French nationality law can be the part which reveals this ideology of French republicanism clearly. This paper analyzed the three major cases of the French nationality law revised after the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was settled in France.

The nationality law of 1889, 1927, and 1993 was based on the ideology of French republicanism. However, the results that the law actually applied to people have found to be all different. The nationality law of 1889 enacted when republicans of the French Third Republic first tried to realize republicanism against royalists and the church force, the nationality law of 1927 that France newly defined social members after experiencing the First World War, and the nationality law of 1993 which appeared due to conflicts between people of the former colonies and people of metropolitan France were all the bills based on republicanism. However, the directions and results that the French actually tried to define have found to be all different. And the three nationality laws were enacted by the

ways which reflected French stance in the situation that France faced.

The analysis of these national laws is the concept that French republicanism can be interpreted as various types, not a hard and fast ideology. And actually, French republicanism will reveal the fact that it reflects the environment and situations of the age more clearly.